

의안번호	2204415
의 퇴 인	김도읍 의원
회 답 일	2024. 11. 1.
추 계 번호	24B4159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고속국도 중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음(제4항 신설) 1.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른 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물류활동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속국도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제5항)	재량지출성

II.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III.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은 유료도로관리청 등이 고속국도 중 20킬로미터 미만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통행량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물류활동의 신속성 등을 높이기 위해 고속국도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고, 국가가 통행료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유료도로는 크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로 나누어지는데, 개정안에서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는 도로를 고속국도로 규정하고 있어, 「도로법」의 분류상 고속국도¹⁾에 해당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만 개정 대상에 포함됨

[표 1] 전국 유료도로 현황

구분	재정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민자고속도로 (건설재원별)	지자체 등 관리도로
2024	36개 노선	22개 노선	34개 구간
	4,276km	883.0km	223.7km

주 1. 남산1호 터널, 3호터널은 혼잡통행료 징수구간(도시교통정비촉진법)

2. 노선합산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노선 간에 중복 발생에 따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 현재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²⁾에 따라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과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고,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

- 고속도로 유형별 통행료 감면현황은 [참고자료 1]과 같으며, 정부는 이 중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명절 통행료 감면분 및 의료지원차량 등의 통행료에

1)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2)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대해서만 지원 중임

[표 2]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국고지원 현황: 2019~202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명절 면제	22,548	29,329	10,771	-	14,058
코로나19 노선버스, 의료지원 차량 면제 등	10,159	4,839	8,153	12,769	16,451

주: 당해연도 지원금액은 전년도 면제 금액에 대한 지원임

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국도 중 20km미만 구간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1,533개 구간(첨부 [참고자료 2] 참고)이나,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다른 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물류 활동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구간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느 노선의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중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감면을 적용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통행료 감면 규모와 그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20km 미만 전체 구간에서 수납한 통행료 수입 총액은 약 8,400억원임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1]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현황

[참고표 1]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통행료 총수입	4,117,494	3,958,916	4,174,100	4,202,652	4,292,578
감면금액 합계	397,439	374,768	346,190	425,868	490,029
소계	113,364	94,973	53,414	121,928	167,927
면제					
군·경 작전차량	4,561	2,833	2,280	4,484	6,403
국가유공자 등	1,614	1,328	1,279	1,235	1,264
유지보수차량	9,172	9,739	7,442	6,293	6,403
교통단속차량	1,815	1,626	1,691	1,753	2,924
구호·구급·소방	1,675	1,654	2,116	2,060	2,076
긴급 통행제한·물류수송	19	90	34	1,291	750
명절(설·추석)	94,508	46,926	0	64,552	128,050
특별(평창)	0	0	0	0	—
노선버스(코로나)	0	30,777	38,572	40,260	20,057
소계	284,075	279,795	292,776	303,940	322,102
할인					
경 차	84,016	78,328	78,225	78,245	78,777
국가유공자 등	4,074	3,551	3,448	3,356	3,264
장애인	34,406	30,219	29,797	29,716	29,583
출퇴근	66,039	67,242	69,567	70,137	73,705
화물차 심야할인	87,798	90,638	95,876	92,790	92,761
전기차·수소차	5,778	9,102	15,555	29,343	43,450
비상자동제동장치	1,964	715	308	353	562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표 2]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통행료 총수입	1,526,995	1,366,804	1,548,841	1,653,301	1,803,800
감면금액 합계	105,643	91,178	81,308	108,606	136,376
소계	35,785	27,811	15,603	35,560	54,781
면제					
군·경 작전차량	1,594	1,360	1,545	1,833	2,032
국가유공자 등	640	558	474	375	353
유지보수차량	1,777	1,691	1,525	1,508	1,504
교통단속차량	420	365	375	365	420
구호·구급·소방	533	464	624	577	499
긴급 통행제한·물류수송	3	0	0	150	0
명절(설·추석)	30,818	14,769	0	18,662	40,967
특별(평창)	0	0	0	—	—
노선버스(코로나)	0	8604	11060	12,090	9,006
소계	69,858	63,367	65,705	73,046	81,595
할인					
경 차	35,535	32,498	32,906	32,790	35,957
국가유공자 등	2,169	1,847	661	676	616
장애인	9,038	7,775	8,926	9,601	9,216
출퇴근	100	92	90	83	74
화물차 심야할인	18,233	16,800	16,648	16,864	15,658
전기차·수소차	2,200	3,842	6,310	12,890	19,102
비상자동제동장치	2,583	513	164	142	972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자료 2] 고속도로 중 20km미만 주요구간 현황('23.12. 기준)

□ 폐쇄식(1,514개)

(단위 : 대, km)

영업소	교통량 (일)	요금 부과거리	영업소	교통량 (일)	요금 부과거리
서울-수원신갈	33,575	17.24	비봉-서서울	12,450	15.83
서서울-서안산	30,360	8.3	부산-양산	10,889	17.34
서부산-장유	29,385	14.73	동광산-서광산	9,512	6.57
동서울-경기광주	23,416	11.34	안산-군자	10,481	9.87
동김해-북부산	20,523	7.42	동수원-서울	9,592	19.46
서안산-군자	20,960	6.54	남순천-고흥	9,312	18.69
부산-남양산	16,675	14.01	울암-연경	14,408	11.99
서서울-안산	15,057	4.97	북수원-동수원	8,877	6.09
서김해-북부산	14,066	11.97	대동-물금	8,681	9.78
화원옥포-남대구	13,150	6.09	고성-통영	8,068	19.73

자료: 국토교통부

□ 개방식(19개)

(단위 : 대, km)

영업소	교통량 (일)	요금 부과거리	영업소	교통량 (일)	요금 부과거리
구리남양주	194,829	2.40	토평	27,043	0.99
김포	190,059	3.75	내서	8,865	5.40
성남	187,481	5.20	순천만	7,622	4.67
청계	171,427	5.26	대왕판교	7,887	5.26
인천	160,540	3.12	대동(개)	4,441	2.83
시흥	158,291	2.66	서영암(개)	2,793	4.96
판교	89,146	5.26	다사	3,097	3.60
남인천	81,518	3.80	일로	1,513	1.46
가락(개)	38,499	5.12	지천	1,941	3.63
하남	34,451	2.43			

자료: 국토교통부